

회 의 규 정

제정 2024. 01. 30.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회의에 관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2 장 총 회

제 1 절 통 칙

제3조(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4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1회 개최한다.

제5조(임시총회) ①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조합원이 총조합원의 4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소집을 청구할 때

②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은 2주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 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이내에 이사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감사가 제3항의 기한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이를 소집하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제1항제2호 : 이사회에서 대표로 선정한 이사

2. 제1항제3호 :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

제6조(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3. 매 사업년도의 수지예산과 사업계획의 설정 또는 변경
4. 결산의 승인
5. 경비의 부과와 그 징수방법
6. 조합원의 제명
7. 조합의 해산·합병 또는 분할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9. 준비금 및 잉여금의 처분과 손실금의 처리
10.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1. 차입금 한도액
12. 기타 이사회에서 처리함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중 제3호의 변경, 제5호, 제10호 및 제12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로서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익상반의 경우) ①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조합원은 당해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조합원의 수는 당해 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소 집

제8조(총회소집) ①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 시 다음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인터넷 주소
2. 전자투표 기간(전자투표의 종료는 총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단, 입후보자가 없는 선거의 경우 당선결정 전까지로 한다.)
3.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4. 그 밖에 조합원이 전자투표를 하는데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③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를 병행 개최할 수 있으며, 그러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의 입후보자 없는 선거안건이 있는 총회의 경우, 반드시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총회를 병행 개최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중 연장자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이사장 궐위시 총회소집 절차는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음)

제9조(조합원 제안) ①조합원은 조합에 대하여 조합원 5명 이상의 서명날인을 얻어 회의일의 3주간전에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 (이하 “조합원 제안”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에 의한 조합원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는 조합원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제10조(의장) ①총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②이사장 또는 제5조 제3항 내지 제4항 각 호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된 자가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절 의 사

제11조(성원보고) ①의장은 예정된 개회시각이 되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총회에 성원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성원 보고를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성원보고 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회자로 하여금 성원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회의 선언) ①의장은 성원보고후 총회의 개회를 선언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개회시각을 늦추어 그 사유가 해소되는 즉시 개회를 선언할 수 있다.

②예정된 개회시각보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그러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면 의장은 출석한 조합원들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총회의 불성립을 선언한다.

제13조(의안상정의 순서) ①의장은 소집통지서에 기재된 순서에 따라 의안을 총회에 상정한다. 그러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이유를 말하고 그 순서를 바꾸어 상정할 수 있다.

②의장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복수의 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할 수도 있고, 1개의 의안을 분할하여 상정할 수도 있다.

제14조(의사등의 보고, 설명) ①의장은 총회의 보고사항과 의안에 관하여 담당이사 또는 감사에게 보고와 설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감사는 자신이 이를 설명하거나 그 보조자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②의장은 제9조에 의거 추가제안을 제출한 조합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당해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5조(발언의 허가) 조합원은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하여야 한다.

제16조(발언권의 부여순서) ①조합원들에 대한 발언권 부여의 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의장은 위의 순서를 결정함에 있어서 아래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발언권을 요청한 순서
2. 발언횟수
3. 직전 발언자의 의견과 동일 여부

제17조(발언의 방법) ①조합원은 먼저 상호와 자기성명을 밝히고 발언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은 의제를 중심으로 하여 되도록 간결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한다.

제18조(발언의 제한) 의장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발언을 제한할 수 있다.

1. 1의제에 2회
2. 1회의 발언시간 5분 이내

제19조(발언의 금지 등) 의장은 다음과 같은 발언에 대하여는 그 금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다.

1. 중복된 발언
2. 의제와 관계없는 발언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발언
4. 의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발언
5. 기타 총회의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발언

제20조(설명담당자) ①조합원으로부터 질문이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설명한다.

- ②조합원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설명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장,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설명의 거절) 조합원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조합원 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되는 경우
5.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제22조(수정동의) ①조합원은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그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수정동의가 성립한 때에는 의장은 총회에 이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그러나 의장이 이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그 동의를 심의에 부칠 수 있다.
- ③의장은 수정안과 원안을 일괄하여 총회의 심의에 부칠 수 있다.

제23조(긴급동의) ①조합원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회의 중에 언제든지 의장에게 긴급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긴급동의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그 부의의 가부를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진행에 관한 동의) ①조합원은 총회의 연기, 속행 등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제출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동의가 제출된 경우 의장은 총회에 그 동의의 채택여부를 묻는다.

제25조(동의를 각하) 의장은 동의를 다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바로 각하할 수 있다.

1. 당해 수정동의에 관한 의안이 심의에 들어가지 아니하였거나 심의를 종료한 경우
2. 이미 동일내용의 동의가 부결된 경우
3. 총회의 의사를 방해할 의도로 제출된 경우
4. 부적법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5. 그 이외에 합리적 이유가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

제26조(연기 또는 속행) ①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기 또는 속행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그 연회 또는 계속회의 일시,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③연회 또는 계속회의 회일은 총회일로부터 2주간 이내이어야 한다.
 ④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말하고 그 날의 총회의 산회를 선포한다.

제27조(휴식) 의장은 의사진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짧은 시간동안 휴회를 선언할 수 있다.

제28조(질의, 토론의 종료) 의장은 의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의와 토론을 종료하고 총회에 의안에 대한 가부를 물을 수 있다.

제29조(의사진행의 일반원칙) 의사진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의사진행의 일반원칙과 관례에 따른다.

제 4 절 표 결

제30조(표결의 선포) ①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의제를 선포하여야 한다.
 ②의장이 표결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누구든지 그 의제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제31조(일괄표결) 의장은 복수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다만, 조합원 제명 및 임원 해임 안건은 제외한다.

제32조(표결의 순서) 의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수정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묻는다. 복수의 수정동의가 제출된 경우에는 원안의 내용과 거리가

먼 것부터 순차로 가부를 묻는다. 그러나 일괄심의할 경우에는 원안을 수정동의보다 먼저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제33조(표결방법) 표결방법은 거수, 기립, 투표, 기타의 방법중 의장이 조합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제33조의1(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①조합원은 정관 제33조 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의 입후보자 없는 선거의 경우,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할 조합원은 전자투표 사전의향서를 조합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원이 제1항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을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8조 제1항 전단에 따라 운영기준의 준수사실에 대한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③조합은 전자투표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자투표 관리 기관을 지정해 조합원의 본인확인절차 등 전자투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자투표를 관리하는 기관의 투·개표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34조(개표위원) ①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의장은 개표위원을 조합원중에서 1인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개표위원은 출석조합원수를 확인하고 투표용지를 배부하여야 한다.

제35조(개표) 개표할 때에는 의장은 그 뜻을 선포하고 개표위원으로 하여금 개합하여 출석조합원수와 투표수를 대조확인하고 개표케 하여야 한다.

제36조(표결결과의 선포) 의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이 종료된 때에는 즉시 그 결과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37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동회의에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

제 5 절 질 서

제38조(의장의 질서유지) ①조합원이 회의중 본 규정을 위배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경고 혹은 제지하며, 그 발언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명에 불복할 때에는 의장은 당회의에서 발언함을 금하거나 퇴장 시킬 수 있다.

③의장은 회의장이 문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또는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39조(모욕발언의 금지) 조합원은 회의에서 타조합원을 모욕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40조(발언 방해금지) 조합원은 회의중 함부로 발언 또는 소란한 행위를 하여 타인의 발언을 방해할 수 없다.

제 6 절 의 사 록

제41조(의사록작성) ①의장은 회의개회와 동시에 회의록에 서명날인할 이사 2인 이상을 지명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의장과 지명이사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회의의 명칭
2. 개회일시 및 장소
3. 출석조합원수 및 출석현황(본인, 대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 원격통신수단 출석기록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출석현황)
4. 회의의 경과와 그 결과
5.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2조(의사록의 비치) 총회의사록과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또는 선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은 작성된 직후부터 계속하여 조합의 주사무소에 비치하고, 조합원 및 조합 채권자의 열람 및 등사에 응하여야 한다. 단, 선거권 행사에 관한 기록을 공개·제공하는 경우 특정 선거인의 투표결과가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이 사 회

제 1 절 통 칙

제43조(이사회의 구성) ①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상근(전무)이사로 구성한다.

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4조(정기이사회) 정기이사회는 매 분기 2째주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때에는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45조(임시이사회)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가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때

제46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2. 기채와 그 상환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4. 총회의 위임사항과 조합의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인への 출자
6. 중소기업자 외의 자의 조합원 가입
7.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9. 상근(전무)이사의 추천 및 겸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총회의 의결사항중 이사회에 위임한 사항은 위임의 범위내에서 의결하여야 하며, 총회의결사항을 번복할 수 없다.

③이사회는 제1항 각호의 사항중 경미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 2 절 기관과 소집

제47조(의장)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되며, 이사장 유고시에는 상근(전무)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8조(이사회 소집) ①이사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일로부터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동영상과 음성이 동시에 송수신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회의를 병행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시 제8조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에 대하여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장은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이 제3항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소집을 요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49조(결의방법) ①이사회 결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로 한다.

②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회 구성원은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이사회에서 조합과 이사장 등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는 당해 이사장 등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장 등의 수는 당해의결의 의사정족수에는 산입하되, 의결정족수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0조(준용규정) 이사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총회」를 「이사회」로 「조합원」을 「이사」 또는 「상근이사」로 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4년 01월 30일부터 시행한다.